2023년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23년
주류면허 민원접수 가이드북

CONTENTS

Ⅰ. 주류 제조면허 신청 ····· 4

Ⅱ.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8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 9

Ⅳ.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 14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 16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 20
주정도매업 면허 ····· 22
수출입업면허(가) ····· 24
수출입업면허(나) ····· 25
주류중개업면허(가) ····· 27
주류중개업면허(나) ····· 28
전문소매업면허 ····· 30
주정소매업면허 ····· 31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32

부록

구비서류 유의사항 ····· 34
타법령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 35
민속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신청 (시·군·구청) ····· 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 47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49

Ⅰ. 주류 제조면허 신청

민원개요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사업계획서 -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 종류의 주류제조방법 신청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 정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시·도지사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관련 업종의 경우)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참 고 및 유의사항	〈참고사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자료실)에서 '주류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참고 - 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 6월)내에 공사 착수,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 1년)이내에 완공하지 않은 경우 면허 효력 상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심사기준	관 련 조 항	내 용
	면허의 제한 (제7조)	•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아래 항목은 대리인, 임원, 지배인 포함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주류제조 관련 법령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제조면허), 동법 제7조 (면허의 제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후속민원의 절차안내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 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후 후속절차 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민원명	주요내용
주류제조면허 신청	제조방법 (추가·변경)신청	– 새로운 주류를 제조하거나 기존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
	제조 및 판매설비 (신설·확장·개량) 신고	– 제조자·판매업자가 관련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고자 할 때 신청
	주류상표 사용 신고	–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 시 신고
	제조장 이전 신고	–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신고

Ⅰ. 주류 제조면허 신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류
[]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❶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6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❷ 신청내용

신청구분	① 주류	② 밑술	③ 술덧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예정수량				
시험제조, 시음행사, 축제 또는 경연대회 목적	사유			
	기간			
	수량			
밑술·술덧 제조목적				
영업 시작 연월일				
④ 종전 면허 연월일		⑤ 종전면허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3.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4.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5.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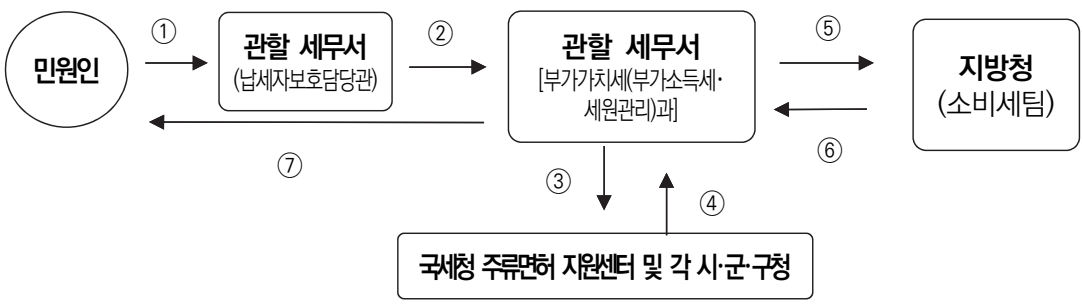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❶: 면허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 ③: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3. ④·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 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II.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 정 조 건
1.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 부실, 소재지 변경(「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2.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 (수입주류 포함)	
3.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 주류 도매업자 (민속주,지역특산주에 한함) 로부터 구입하여 도매 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 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4. 주정도매업 면허	주정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5. 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6. 수출입업 면허(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 하여야 한다. 다만,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 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외국산 주류	
7. 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입(또는 수출,주한국제 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주류	
8. 주류중개업 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 (수입주류 포함)	
9. 유흥음식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10. 관광지정업 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	
11.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주정	
12. 발효주정 소매업 면허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13. 의제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4. 전문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제6호 및 제59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2023.2.28.개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주세법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주세법」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2. 28.〉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3.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5. 주류중개업

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나.「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Ⅳ.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민원개요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후 신청「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기준(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탁주·약주·전통주 제조자와 청주·맥주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등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사본(면허증 교부 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참 고 및 유의사항	-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면적 기준에 미달하여도 설치 가능 -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분점을 포함)은 면허하지 않음 (다만, 슈퍼·연쇄점의 본부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주류중개업 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 등) 등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 직매장 소재지		
	② 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		
	③ 시설내용	대지 ㎡, 창고 ㎡	
	④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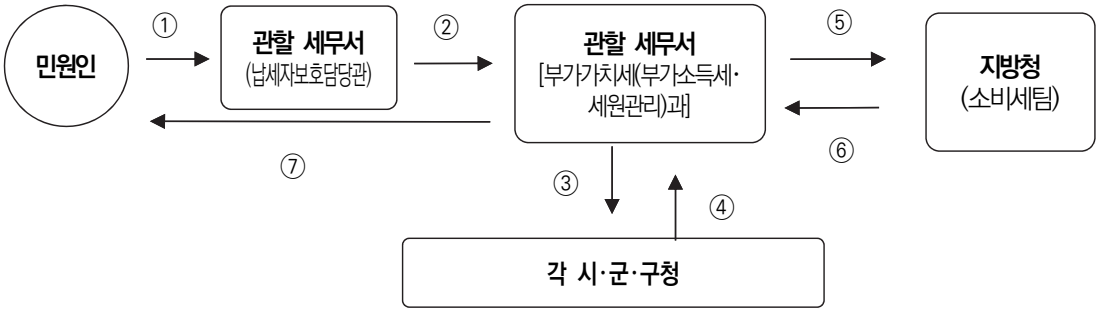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기준(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민원개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일반 탁주·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세무서 추첨대상자 선정 보고 ➡ 지방청 추첨대상자 선정 결정 ➡ 세무서 추첨대상자 안내문 송달 ➡ 공개 추첨 ➡ 면허교부대상자 확정 및 교부	

추진일정

* 해당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진행되므로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업 무 명	처 리 기 한	처 리 기 관
면허 신청기간	8.31.	세무서 민원실·부가가치세과
추첨대상자 선정	9월 중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추첨대상자 보고	9월 중순	세무서 → 지방청
심사결과 통보	9월 말	지방청 → 세무서
추첨대상자 안내문 교부송달	10월 초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면허요건 적격자 보고	10월 중순	세무서 → 지방청
추첨	10월 중순	지방청 부가가치세과
면허교부대상자 확정 및 서류제출	11.30.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면허증 교부	12월 중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신용정보조회서(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66㎡ 이상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 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 면허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 신청 가능.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참 고 및 유의사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수,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내에서 부여 -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법인 설립 전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 추첨일 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 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추첨대상자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면허신청 시에 임대인의 건물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V. 주류 판매면허 신청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0일

❶ 신청인 (신고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판매장 소재지 또는 판매장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전화번호(전자우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❷ 신청 (신고) 내용	① 면허종류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창고면적	㎡
	③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번호 및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승인번호(), 일련번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주류 판매장이 없는 경우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와 라목2) 및 같은 목 3) 가)의 서류만 해당합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잔액증명서를 말합니다)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 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수수료 뒤쪽 참조



(뒤쪽)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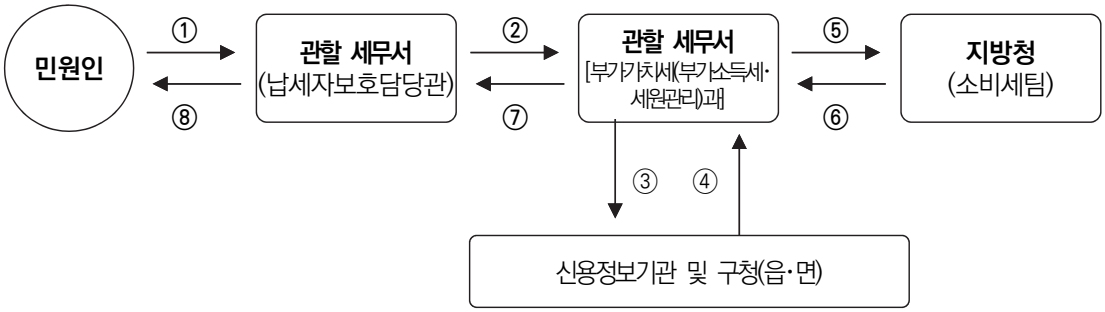
1. ❶ 면허 신청인·신고인(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2. ① 신청(신고)하는 주류 판매업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 창고면적을 적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③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수수료

1.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0,000원
2. 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 30,000원
3. 의제 주류 판매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판매면허 처리절차]



① 판매면허 신청 ② 인계 ③ 관련 기관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승인 ⑦ 인계 ⑧ 면허증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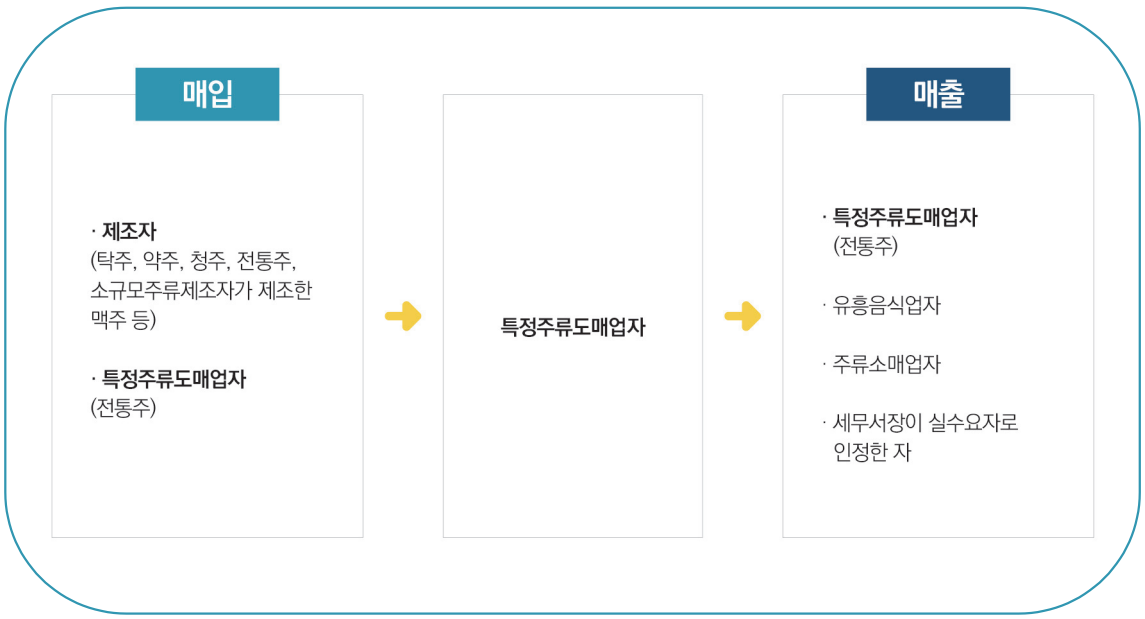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민원개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탁주,약주,청주,민속주,지역특산주,소류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 제조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별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와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에 한함)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신용정보조회서(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창고면적 22㎡ 이상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조세범 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참 고 및 유의사항	- 창고는 무허가 건물 및 타법령에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창고면적은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하고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는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주정도매업 면허

민원개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정만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는 면허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신용정보조회서(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 다음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대
	나) 화학천칭	감도 0.1㎎ 1대
	다) 현미경	1,000배 이상 1대
	라) 항온항습기	0 ~ 65℃ 1대
	마) 건조기	110℃ 1대
	바) P.H메타	감도 0.1 1대
	사) 고압살균기	20파운드 이상 1대
	아) 증류수채취기	시간당 2ℓ 이상 1대
	자) 무균상자	1대
	차)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카) 주정계	0.2도 눈금 0 ~ 100도 1조
	타) 비중계	0.7 ~ 1.85 SG 1대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수출입업면허(가)

민원개요	국산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수출입업면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참 고 및 유의사항	-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는 면허 부여가 제한되나 주류 수출면허는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 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수출입업면허(나)

민원개요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 수입하여 도매하기 위하여 수출입업면허(나)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신용정보조회서(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 창고면적 22㎡ 이상 -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주정도매업 면허요건 중 시설조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 (주정도매업면허 참고)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V. 주류 판매면허 신청

참 고 및 유의사항	-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함 - 창고는 무허가 건물 및 타법령에 창고로 사용이 제한된 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로 창고로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창고면적은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하고 사무실과 창고의 위치는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여야 함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주류중개업면허(가)

민원개요	주류의 수입 또는 수출을 중개하기 위하여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V. 주류 판매면허 신청

주류중개업면허(나)

민원개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수입주류 포함)를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 중개하기 위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0,000원 첨부) -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V. 주류 판매면허 신청

전문소매업면허

민원개요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하여 전문소매업 면허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세무서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30,000원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주정소매업면허

민원개요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정소매업 면허(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4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세무서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30,000원 첨부) - 주정 도매업자 확인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Ⅴ. 주류 판매면허 신청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민원개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유흥음식점 면허)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판매(의제소매면허)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처리기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인 터 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주류판매 여부 체크
	예 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서식 필수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세무서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택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류 판매 여부 체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주류 판매 여부 체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흥음식점 면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면허요건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등록과 동시 면허신청 가능)	
참 고 및 유의사항	-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불가 - 의제주류판매업(유흥음식점)면허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장소에서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영업신고증 필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에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므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등에 대한 유흥음식점 면허는 불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의제주류판매업(일반소매)면허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므로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옷가게, 숙박업소, 극장, 학교 도서관 등의 일부 공간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허 불가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의 의미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식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류를 일부 취급하는 경우 신청 가능	
근거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9조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면허 또는 허가·신고의 거부)	

2023년
주류면허 민원접수 가이드북

부록

구비서류 유의사항 ····· 34

타법령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 35

민속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신청 (시·군·구청) ····· 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 47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49

구비서류 유의사항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신청면허의 개수만큼 제출 필요(꼭 원본 제출)
ex 제조면허 신청 시 탁주, 약주를 동시 신청한다면 신청서마다 수입인지 각각 2매 제출

채권 사본 제출

면허증 교부 받을 때 제출 필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별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00,000원 주류제조업면허 300,000원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150,000원 주류제조업면허 450,000원

법인과 임원 관련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면허 관련 표기 필요
ex 주류판매업/주류제조업/주류수출입업 등

의사회 회의록 제출 필요
why? 다른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이 주류면허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한 의사회 회의록을 통해 법인 실제적 운영 여부 확인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사항 및 거주 이력 표기 필요
why? 면허 검토 시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호 지방세 체납·포탈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 필요

신용정보 조회서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 주정도매,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는 신용정보조회서가 필수 구비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제출)
why?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신규 대출이 가능한 자에게만 면허 승인 가능

•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 되었을 것

•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여신 거래가 있었던 경우 가능)
- 우편으로 요청(15일 정도 소요)
- 한국신용정보원 직접 방문

타법령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관련 고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2-22호)
제2조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면허

○ 주류수출입업(나)(수입면허)는 면허 취득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 필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업무 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사무실 표기)이어야 영업등록 승인가능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령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령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타법령의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 「건축법」과 면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각종 허가·면허 등이 제한됨

- 면허 신청한 해당 층이나 호실 관련 위반사항이 아니어도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확인 후 면허 신청 필요

[관련 법령]

건축법

법령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면허

[공장]

○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혜택이나 정부·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등 장점 다수 존재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주류 도매업은 해당 없음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의해 제조업 등만 입주가 가능하여 제조면허만 승인 가능

- 법령 상 판매업이 가능하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만 가능하게 되어있어 주류도매업은 승인 불가

 즉 공장은 주류 판매업면허가 불가능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지자체 의견 조회 확인함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각 목의 요건에 주류도매업은 해당 없음)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민속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신청 (시·군·구청)

민원개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기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시·군·구청의 농업 관련 부서 예시) 강화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포천시 문화경제국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팀 등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면허 추천서 발급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제조장 위치, 제조장 도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원료공급계약서 등	
추천요건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2.7〉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kℓ	kℓ	kℓ	kℓ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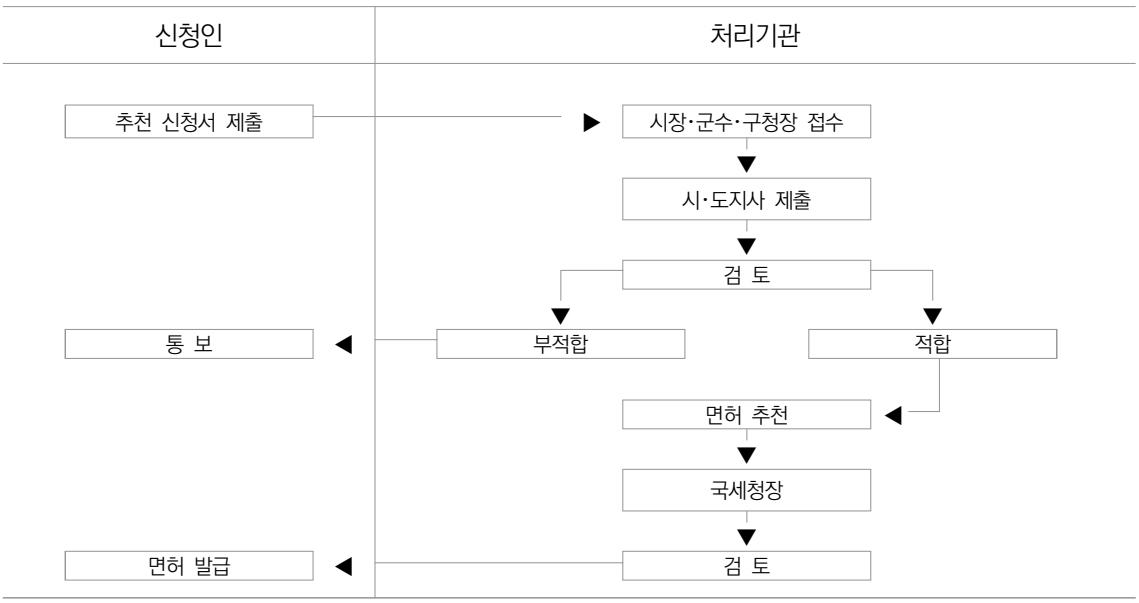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시 시·군·구청 제출 예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연간제조예정수량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백만원)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명	백만원			톤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실제 설비 들어갈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단위 : 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부지		-			
2. 건물		-			
3. 담금·제성·저장					
가.발효조1					
나.발효조2					
다.증자조					
라.제성조1					
마.제성조2					
바.제성조3					
사.숙성조					
4. 부대시설					
가.세병시설					
나.병입시설					
다.타전시설					
라.여과시설					
마.증류시설					
5. 시험시설					
가.간이증류기					
나.주정계(10셋트)					
다.온도계					
6. 기타시설					
가.추가실험설비					
나.펌프및배관외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 차입	기 타

다. 생산계획

구분 /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톤)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톤)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기타 (일반구매)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 원료별 구매처 (공급계약서는 별첨9) 원료공급계약서 첨부)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각 주종별로 공정도작성)

〈탁주 : 탁주명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각 주종별로 설명서작성)

〈탁주- 000 탁주〉

1. 1단 담금

2. 2단 담금

3. 3단 담금

4. 발효 및 제성

5. 병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별첨1) 제조장 위치(지도 이미지)
주소 :

별첨2) 제조장 도면(도면 이미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



민원개요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위해 영업에 필요한 교육 및 시설을 갖춘 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인 터 넷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영업등록 바로가기 전자민원>전자 민원 신청>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지방청 검토 ➪ 등록증 발급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신 청 서	영업등록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한요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7항 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타법령 저촉사항 확인필수)** 2.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참 고 및 유의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관련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영업의 등록 등), 별표 7(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2. 20.〉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보관시설의 소재지	영업장 면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한함)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유형1 : 유흥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주류판매 사실을 영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유흥음식점면허) 발급

※ 면허장소(사업장소재지)는 영업허가 장소와 동일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에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므로, 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허가(신고)자에 대한 유흥음식점면허는 불가(식품위생법시행령 §21) (다만, 제과점영업의 경우 '09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의 시설기준 개정으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부여 가능)

○ (유형2 : 슈퍼마켓 등)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주류판매사실을 신고한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일반소매) 발급

※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불가

⇒ 주세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대상

※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옷가게, 숙박업소, 극장, 학교, 도서관 등의 일부 공간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불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시 유흥음식점 면허 발급

본 안내서는 주류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면허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가 상업적 용도 등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세부내용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안내서의 내용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현행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북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인천지방국세청 제작 –